

## 성신교정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칙」 제74조에 의해 설치된 성신교정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신교정 소속 교원(강사 등 비전임교원을 포함한다), 직원(본 교정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을 포함한다),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2차 피해’란 동 규정 제22조제5항의 불리한 처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가해자,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구성원’이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성신교정 교원, 직원, 학생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부총장이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를 두며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에는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민원 및 상담을 담당하는 고충상담실을 두며, 상담실에는 실장을 포함하여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을 둔다.

④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 담당자를

각각 구분하여 둔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 ⑤ 센터는 필요한 경우 상담(원), 조사(원)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3. 인권침해 등 사안에 대한 상담 활동
  - 4.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
  - 5. 그 밖에 구성원의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센터는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센터는 구성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년 인권 관련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인권 관련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부총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①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실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 시에는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 위촉 시에는 임기를 정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인권심의위원회의 기능) 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 3.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사위원 및 사건조사 과정에 관여한 외부 전문가는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④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부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1회(회피 제척) ① 센터장은 사건의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을 해당 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상담 및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인권침해 등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신고할 수 없다.

제13조(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이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제12조제3항(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5. 센터를 통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종결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개시)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조사업무를 부여한다.
- ③ 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진행상황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 센터장은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출석요구, 진술 정취, 진술서 제출, 관련자료 제출, 사실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술서를 요구받은 당사자 및 관계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위원의 임무) ① 조사위원은 센터장으로부터 조사를 위임받은 사건에 한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다.

② 조사위원은 조사업무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센터장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진술기회 부여) ① 인권심의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서면진술서만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운 경우 피조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에 나설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정 및 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센터장은 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부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부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처리 또는 관여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그 대리인, 조력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피해자 보호) ①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처리 또는 관여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침을 준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 및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센터장, 인권상담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에 직원 2인, 학생 2인, 인권전문가 1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학생 및 인권전문가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평가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5조(경비 지원) ①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성신교정 인권센터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